

국토교통부 훈령 제547호

종전의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463호),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2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1호),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493호), 「청렴도 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등 점검자 행동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26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사무 처리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374호),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2014-466호),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5호) 내용을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으로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정

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2편의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과 국토교통부 외의 기관에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3편은 법 제14조에 의거 지정·고시된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의거 신기술사용자인 발주자가 기술개발자에게 지급할 기술사용료에 적용한다.

④ 제4편은 법 제19조, 영 제41조제2항, 규칙 제15조에 따라 건설정보표준, 건설정보통합전산망 구축사업, 건설사업정보화 정례협의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적용한다.

⑤ 제5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제1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토목공사(건설기계·측량부문을 포함한다),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및 건설신기술 품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⑥ 제6편은 품질 및 안전관리 현황 등을 종합 점검하는 중앙품질안전관리단 및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 및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건설공사의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행동요령과 건설공사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6편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영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의 규정에 따르며, 제5장의 규정은 관계법령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소속된 자와 해당분야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점검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⑦ 제7편은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 감경 및 가중기준 등을 정하여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다.

제3편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및 현장적용

제1장 정 의

제43조(정의) 제3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청”은 신기술이 적용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3.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발주청이 신기술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4. “기술평가기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5. “유사신기술”이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다른 기법의 신기술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이 공정한 것을 말한다.
6. “기술개발자”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을 받은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7. “기술사용료”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거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費)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8. “예정가격”이라 함은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제44조(적용범위) 제3편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건설신기술 현장 적용

제45조(위원회의 심의 등)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 시행시 다음 각 호의 1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설계, 시공, 계약방법, 활용범위 등의

적정성 여부

2. 제1호의 계약방법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마목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4호마목의 규정에 근거한 수의계약일 경우 공사의 특성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받은 시험시공의 실시여부

4. 기타 신기술의 현장적용과 관련한 사항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당해 신기술을 타공법으로 설계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영 제19조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⑤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변경한 경우에는 향후 6개월 이상 18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당해 신기술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⑥발주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기술활용심의 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유사신기술의 활용) 발주청은 적용하려는 신기술과 유사한 신기술이 있는 경우 설계 및 제한경쟁입찰 등의 절차에서 유사신기술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제3장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제47조(공사 참여유형에 따른 기술사용료) 발주자는 기술개발자의 공사 참여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사용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한다. 다만, 기술개발자가 재료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기술공사비에서 재료비를 제외할 수 있다.
2. 기술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8조(보호기간에 따른 기술사용료)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9조(기술사용료 산출) 기술사용료는 신기술공사비에 일정 요율과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50조(신기술공사비) 신기술공사비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신기술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기계경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신기술의 시공 범위는 해당 신기술의 기술범위를 기준으로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51조(요율) 기술사용료 산출시 적용하는 요율은 별표14을 기준으로 발주자가 해당 신기술의 특성 및 적용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단, 8.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52조(신기술공사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신기술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_1 - \frac{(x - x_2)(y_1 - y_2)}{x_1 - x_2}$$

※ x : 당해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요율, y2 : 큰 금액요율

제53조(낙찰률) 기술사용료 산출시 실제 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률을 80%로 적용하고, 실제 낙찰률이 80% 이상인 경우 해당 낙찰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4장 건설신기술 사후관리

제54조(신기술의 사후관리 등) ①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당해연도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신기술의 현장 적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평가서를 통보받은 기술평가기관은 이를 축적 및 분석하기 위해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한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내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발주청이 사후평가서를 입력한 경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5편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제1장 일반사항

제81조(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활용) 이 규정에 의해 제정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및 건설신기술 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2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에 대한 관리기관(이하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의 제정·개정, 연구·조사, DB구축, 해석 및 보급 등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사비산정 관리기관은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내에 독립된 기구(공사비평가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이 관련업무를 고의로 태만히 하거나 공신력에 있어 물의를 야기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지정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83조~제93조 (생략)

제4장 신기술품셈의 관리

제94조(신기술 원가계산서 검토 및 품셈안 작성) ① 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건설신기술 지정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이하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4조에 의한 신기술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원가계산서와 별지 제23호 서식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원가계산서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1차 검토결과를 30일 이내에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령 제32조의 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1차 심사가 통과된 기술에 대한 심사결과 및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일정 등을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건설신기술품셈안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건설신기술 현장실사에 참석하여 신기술원가계산서 및 건설신기술품셈안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할 수 있다.
- 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전문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⑥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술에 대한 건설신기술품셈안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 전까지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5조(건설신기술품셈의 확정) ①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2차 심사가 통과된 기술에 대한 심사결과를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신기술 지정·고시 전까지 건설신기술품셈을 확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신기술 지정·고시 후 15일 이내에 건설신기술품셈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③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품셈의 제·개정 시 보호기간 내 건설신기술품셈의 개정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6조(건설신기술품셈의 변경) ①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신기술 개발자의 심의요청이나 필요에 따라 신기술의 범위 또는 지방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건설신기술품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건설신기술품셈 변경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

여야 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신기술품셈의 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건설신기술 변경사항 인정시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변경내용 확인 후 건설신기술품셈을 변경, 확정하여야 한다.

④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신기술품셈 변경이 확정되면 세부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건설신기술품셈을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제정 2015. 6. 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훈령은 폐지한다.

1.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463호)
2.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2호)
3.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1호)
4.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493호)
5. 「청렴도 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등 점검자 행동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26호)
6.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사무 처리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374호)
7.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2014-466호)
8.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5호)

제3조(금지행위 및 감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금

지행위 및 감점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훈령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6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14]

기술사용요율표

신기술공사비	기술사용요율(%)
1억원 이하	8.5
2억원	8.3
5억원	8.0
10억원	7.5
20억원	6.8
50억원	6.0
100억원	5.0
100억원 초과	3.5

신기술활용심의 관리대장

번호	심의일	신기술명 (지정번호)	신기술 개발자				공사개요			심의결과요약 ¹⁾	비고
			법인명 (개인명)	대표자	법인번호 (주민번호)	연락처	공사명	신기술 공사비	계약 형태		

[별지 제21호서식]

신기술 사후평가서

작성일: 년 월 일

1. 신기술 및 공사개요

신 기술 명	(지정번호 :)		
기술개발자			

공 사 개 요	발주자		시공자	
	개발자 참여형태	☐ 직접참여(기술사용료 미지급) ☐ 기술지도(기술사용료 지급) ☐ 자재, 장비 납품		
	공사명 (계약명)	도급 공사명: 하도급 공사명: ※ 하도급 공사명을 모르는 경우 생략 가능		
	현장주소			
	총공사비	원	신기술 공사비	원
	총공사기간	~	신기술 공사기간	~

2. 활용 평가

평가시기	☐ 준공 ☐ 하자 보수공사 준공
------	---

평가 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평가				
			매우우수 (1.0)	우수 (0.9)	보통 (0.8)	미흡 (0.7)	매우미흡 (0.6)
공사비절감	시공비 절감	10					
	시공중 관리비 절감	10					
	타공종의 공사비 절감에 기여	5					
공기단축	공정단순화	10					
	기계화시공(인력 감축)	10					
시공성	시공용이성	10					
	신기술시방서 준수	10					
	타공종과 간섭 축소	5					
	인력 및 장비 적시 투입	10					
품질향상	내구성 향상	10					
	시공목적물의 완성도	10					
	시공상의 하자 저감	10					
친환경성	폐기물처리 및 환경관리 상태	5					
	환경관련 민원 저감	5					
안전성	안전사고 저감 효과	10					
보급활용성	타 현장에 추천	10					
	협력사와의 분쟁 발생 저감	5					
	안전사고 저감	5					
계		150					

※ 해당란에 ○표

3. 신기술 활용에 대한 의견(유사한 현장에 적용시 참고 사항)

4. 신기술 활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

5. 작성자 및 확인자(비공개)

평가자	소속기관		부서	
	전화번호		직위,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기관		부서	
	전화번호		직위,성명	서명

- ※ 1. 감리현장: 평가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자(발주청 담당자)
 2. 발주청 직접 감독현장: 평가자(공사관리관), 확인자(직 상급자)

[별지 제23호서식]

건설신기술 품셈 마련을 위한 작성서식

I. 신청자 정보

작성기관		부 서	
성 명		전 화	
팩 스		이 메 일	

II. 신청 신기술 개요

2-1. 신기술명

2-2. 신기술 개요

* 귀사의 신기술 개요와 기존기술과의 차이를 간략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신기술의 범위

* 신청서 상 귀사의 신기술 고유범위를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신기술 시공절차

“신기술 시공절차”는 신기술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구체화된 신기술의 고유영역을 독립적인 시공프로세스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교대상 기술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별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시공절차 비교표

기존기술 시공절차	신기술 시공절차	표준품셈* 관련 부분 장-절-항	신기술 고유영역 (해당시 ○ 표시)

비교대상 기존기술 설명	* 비교대상 기술의 적정성 설명
기존기술 명 : 기존기술 특성 및 신기술 대체 적정성 — — —	

* 비교대상 기술은 아래 유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신기술이 대체할 수 있는 기술특성 보유

**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특허기술 또는 기존 신기술

* 표준품셈 : www.kict.re.kr → 국토교통전자정보관 → 공사정보 → 건설공사표준품셈

[작성예시]

기존기술 시공절차	신기술 시공절차	표준품셈 관련 부문 장-절-항	신기술 고유영역 (해당시 ○ 표시)
예시1) 참고하고 있는 표준품셈 상세히 제시			
①거푸집제작	①거푸집 제작	토목 6-3-2 합판거푸집 (구체화 필요)	
	②특수시트 부착	자사기준	○
②거푸집 조립	③거푸집 조립	토목 6-3-2 합판거푸집 (4회)	
③콘크리트 타설	④콘크리트 타설	토목 6-1-2 콘크리트 펌프차타설 (무근 50m³미만)	
예시2) 신기술 영역 세분화 제시		표준품셈 관련 부문 장-절-항	신기술 고유영역 (해당시 ○ 표시)
③ 말뚝시공	③ 말뚝시공 - 일렬말뚝 - H말뚝 - 캡형 유공강판보강재 사용	- 신기술 고유영역이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시 공절차 분리 필요	
↓	↓		
③ 말뚝시공	③ 말뚝시공-일렬 H말뚝		
-	④ 캡형 유공강판보강 재		○

3-2 시공절차 비교표 설명자료

“3-1 시공절차 비교표”에 제시하신 기존기술 및 신기술 시공절차의 세부 항목별 설명자료를 사진 또는 도해(圖解) 등과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신기술 원가산정기준

4-1 시공절차 세부항목별 소요 인력, 장비, 자재 등

(단위)

시공절차 세부항목 ^①	소요 인력, 장비, 자재		단위	소요량 ^②	출처 ^③
	품명	규격			

[주^④] ①

②

③

⋮

자사기준 적용 품 설명	* 자사기준 적용항목에 대한 간략한 사유 설명
가. 항목명 : 유 형 : 조정사유 : 조정내용 : 나. 항목명 :	

* 자사기준 적용 품 유형

** 1.현장실사에 의한 조사 값 적용 : 실사내용(조사기준) 간략 설명

** 2.유사 관련 기준 응용 : 응용한 품 기준 및 증감사유 설명

** 3.개발 또는 신규장비 적용 : 손료산정기준 설명

① “3-1 시공절차 비교표”의 신기술 시공절차 세부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

- 신기술 시공절차 세부항목 중 복수의 세부항목이 1개의 정부 표준품셈과 대응되는 경우는 출처가 동일한 시공절차 세부항목을 모두 기입(아래 예시 첫칸)

- 표준품셈 복수 항목을 조합하여 신기술 시공절차 세부항목을 구성한 경우, 소요 인력, 장비, 자재 등을 표준품셈 단위로 분개하여 출처 식별이 가능하도록 작성

② 소요량 적용기준이 복잡한 경우 등 필요시 적절하게 양식변경 또는 별지 사용

③ 정부 표준품셈이 있는 항목은 표준품셈의 부문, 장-절-항 표시, 표준품셈 없는 경우는 출처(자사기준 등) 기술

④ 주기사항은 제시한 품의 적용기준 및 적용범위 등, 설계시 참고사항을 명확하게 기술

[작성예시]

(m²)

시공절차 세부항목①	소요 인력, 장비, 자재		단위	소요량②	출처③
	품명	규격			
①거푸집제작 ③거푸집조립 ...	합판		m²	0.47 (3회 기준)	표준품셈 토목, 6-3-2 합판거푸집
	각재		m³	0.018(3회 기준)	
	...				
	형틀목공		인	0.10 (3회 기준)	
	...				
② 특수시트부착	시트재료		m²	1.252	자사기준
	보통인부		인	0.042	
...					

[주] ① 본 품은 소운반 및 재료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② 동바리 재료 및 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수중에서 거푸집을 조립·해체할 때에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자사기준 적용 품 설명(예시)	* 자사기준 적용항목에 대한 간략한 사유 설명
- 항목명 : ②특수시트부착 유 형 : 유사 관련 기준 응용(관련품셈 건축 13-6-1 합성고분자 시트) 조정사유 : 현행품의 경우 방수공이 투입되고 있으나, 시공이 단순화되어 보통인부로 시공가능 조정내용 : 방수공 삭제, 현행품셈 방수공+보통인부 투입기준(0.6인) 품의 70%를 보통인부에 적용 * 장비개발의 경우 기계경비(손료, 운전경비, 장비가격) 기준 제시 * 재료의 경우 할증포함 여부 제시 * 공구손료기준(공구 종류)제시	

4-2 신기술 일위대가(신청 신기술과 기존기술 분리하여 작성)

시공절차 세부항목	소요 인력, 장비, 자재		단위	소요량	단가			금액 (소요량×단가)				단가출처	비고
	품명	규격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계**													

- 굵은 실선 안은 “4-1 시공절차 세부항목별 소요 인력, 장비, 자재 등(현행기준)”과 동일하게 작성

- 시공절차별로 일위대가 작성

- 단가출처

* 자재비 : 물가정보지 해당월 기재(예, 물가정보 10월)

* 노무비 : 표준품셈 적용 기준 제시(예, 2012년 하반기), 자체기준 인 경우

* 경 비 : 경비산정기준월 제시(2012년 10월)

- 비고 : 원가계산서상 해당 page 기입

** 계 : 금액(소요량×단가)의 합계를 기재

[별지 제24호서식]

원가계산서 적정성 검토서식

□ 신청 신기술명(관리번호 호)

I. 신기술 분류

기존공법 보완	자재/재료/장비 개발(보완)	독립기술	기타

II. 신청 신기술 시공절차 및 고유영역

1) 시공절차 적정성	적정()	보완필요()	제시필요()
3) 표준품셈 관련항목(장,절,항)	적정()	보완필요()	제시필요()
4) 비교대상 기존기술의 적정성	적정()	보완필요()	제시필요()
5) 신청 신기술 고유영역 적정성	적정()	보완필요()	제시필요()

보완사항	* 번호별로 사유 및 보완내용 설명

Ⅲ. 신청 신기술 원가산정 적정성

1) 3-1의 시공절차 별 세부항목과 일치여부	적정()	보완필요()	제시필요()
2) 출처(품셈)제시여부	적정()	보완필요()	제시필요()
3) 현행 품셈과 비교	적정()	보완필요()	제시필요()
4) 적용단위 제시여부	적정()	보완필요()	제시필요()
5) 간접비 등의 적정성	적정()	보완필요()	제시필요()
6) 일위대가와 일치 여부 - 항목, 수량, 단위 등의 적정성	적정()	보완필요()	제시필요()
7) 적용단가, 신규자재, 노임단가의 적정성	적정()	보완필요()	제시필요()
8) 수량산출 및 할증 등의 적정성	적정()	보완필요()	제시필요()
9) 기존 기술과의 공사비 비교	적정()	보완필요()	제시필요()
10) 신기술 범위내에서 작성여부	적정()	보완필요()	제시필요()

보완사항	* 번호별로 사유 및 보완내용 설명

기타의견

* 해당 항목별 종합검토의견 제시

--

년 월 일

검토기관 :

검 토 자 : (인)